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40 증권투자신탁 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유**

- ① 주식 운용전문인력 변경(송근용 → 이호영)
- ② 이익분배방법 변경(전액 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 유보)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6년 10월 21일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 정보		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송근용	<u>이호영</u>
4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6.9.30. 기준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송근용	<u>이호영</u>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6.9.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송근용 : 2015.10.22~현재	<u>송근용 : 2015.10.22~2016.10.20</u>
나.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	<u>이호영 : 2016.10.21~현재</u>
5. 운용전문인력	송근용 : 2014.09.03~현재	<u>송근용 : 2014.09.03~2016.10.20</u>
나.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		<u>이호영 : 2016.10.21~현재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서식 개정에 따라 [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] 관련 내용 삭제	<u>삭제</u>
나. 모자형 구조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서식 개정에 따라 [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] 관련 내용 삭제	<u>삭제</u>
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	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



<p>가. 이익 배분</p>	<p>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	<p>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※ "2016년 10월 21일"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<u>집합투자기구의 회계 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</u>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<u>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	--	--